

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87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2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위위원장

제안이유

- 93. 2. 1자로 중구와 남구가 원미구, 소사구, 오정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노동복지회관의 위치를 중구에서 오정구로 정정코자 조례 개정

주요골자

- 노동복지회관의 위치 중 구 명칭 정정

- ┌ 현행 : 중구
- └ 개정 : 오정구

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

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중구”를 “오정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수	정	안
제2조(위치)복지회관은 부천시 중구 오정동 611번지에 둔다.	제2조(위치) <u>오정구</u>			